

#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 [ 목적 ]

제 2조 [ 용어의 정의 ]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 4조 [ 보험금의 청구 ]

제 5조 [ 보험금의 지급절차 ]

제 6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

##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7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제 8조 [ 피보험자의 범위 ]

제 9조 [ 특약의 소멸 ]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 특약 보험료의 납입 ]

##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1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

제12조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제13조 [ 해지환급금 ]

제14조 [ 배당금의 지급 ]

## 제6관 기타사항

제15조 [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 별표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1조 [ 목적 ]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전환전 계약의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 2조 [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라. 전환전 계약 : 주계약을 말하며, 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환전 계약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을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표준이율 :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보장개시일(이하 "보장개시일"을 이 특약의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종신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입니다.
-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용어해설

####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특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 제1회 보험료 ]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제 4조 [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용어해설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 제 5조 [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

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b>용어해설</b>
<b>[ 보험금 가지급제도 ]</b>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 제 6조 [ 보험수익자의 지정 ]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계약자로 합니다.

#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 제 7조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이 소멸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확정된 후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자로 하며,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전환을 원하는 보험수익자마다 개

별적으로 이 특약을 청약하여야 합니다.(이하 “주계약”은 “전환전 계약”이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연금전환을 신청할 때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정액형(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00세 보증)
		체증형(10년, 20년 보증)
		소득보장형(10년, 20년 보증)
		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 제 8조 [ 피보험자의 범위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다만,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전환을 원하는 보험수익자마다 개별적으로 이 특약을 청약하여야 합니다.

### 제 9조 [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종료 등으로 이 특약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용어해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0조 [ 특약 보험료의 납입 ]

이 특약은 전환전 계약의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1조 [ 계약자의 임의해지 ]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2조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 ⑤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용어해설

##### [ 공시이율 ]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예시 ]

- 계약일부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계약일 : 2015년 4월 1일, 현재 : 2020년 4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5%)로 적립합니다.
- 계약일부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계약일 : 2015년 4월 1일, 현재 : 2030년 4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합니다.

### 제13조 [ 해지환급금 ]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에 따릅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1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4조 [ 배당금의 지급 ]**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6관 기타사항**

#### **제15조 [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 ■ 연금(제3조)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정액형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보증지급기간 : 10년/15년/20년/25년/30년/35년/40년/100세)
	체증형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2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보증지급기간 : 10년/20년)
	소득 보장형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보증지급기간 : 10년/20년)

####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다.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지급금액	연금개시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주) 1.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도 변경됩니다.

2.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의 경과기간을 더하여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3.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경과 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 30회, 50회, 6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6.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5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연금 (제3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제13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상기 공시이율은 제1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전환전 계약 약관에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